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의안 번호 | 512 |
|---|---|

2021. 11. 24.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**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4.  이도희 의원 등 5명**

**나. 상정의결**

-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1. 24.)

**“ 원안가결 ”**

## 2. 제안이유( 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 )

○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,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나.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2조～제3조)

다.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징계의 신속한 처리 및 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～제6조)

## 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## 5. 검토보고 요지( 전문위원 : 김효섭 )

○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강남구청장에서 강남구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, 강남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던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로 분리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규칙 제정은 적절하다 사료됨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## 7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## 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## 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## 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1부.

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

**(이도희의원 대표발의)**

| 의 안 번 호 | 512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1. 11. 4.
발 의 자 : 이도희·이향숙·이재진·허순임·허주연(이상5인)

## 1. 제정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등이 개정(‘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나. 의원면직 제한 및 제한 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2조~제3조)

다.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징계의 신속한 처리 및 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　　호

#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**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(이하“공무원‘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」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
2.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

3. 감사원, 검찰,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
4.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

**제3조(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)**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

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반자에 대한 문책)**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징계 절차의 신속한 처리)**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세칙)**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